

#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소영철 의원입니다.

□ 현행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을 원가 수준, 적자 규모,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,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□ 그런데,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또는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,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하여 시장이 자의적으로 이용권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실제로,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'기후동행카드'의 경우,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,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니다.

- 또한 ‘돌려쓰기’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었고, 현재도 뚜렷한 예방 및 단속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에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, 정기·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·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대중교통 정기·무제한 이용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,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으로 심의,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